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22-13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제4조, 제10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안 제5조)
- 중복된 문장 수정(안 제6조)
-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의 점검의무 추가 및 조정(안 제10조 2호, 3호, 4호)
-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사항 추가(안 제14조)

### 3. 의견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목)부터 2022년 11월 0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2094-1984, FAX : 490-4428, Email: jkm0316@jn.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